

1. 개정이유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군·구의 공동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일괄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업 신고시 제출서류 일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 (안 제3조)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수기 대장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임약제 등의 보급 (안 제13조)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군·구의 공동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로 변경함

다.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안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

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협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관·관리”를 “보관·관리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로 한다.

제13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산후조리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 명					
시설 설비 내역	임산부실	m ²	영유아실	m ²			
	모유수유실	m ²	급식시설	m ²			
	세탁실	m ²	목욕실	m ²			
	화장실	m ²	사무실	m ²			
	그 밖의 시설			m ²			
	설비내역						
직원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미화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 ×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5.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u>완비증명서</u>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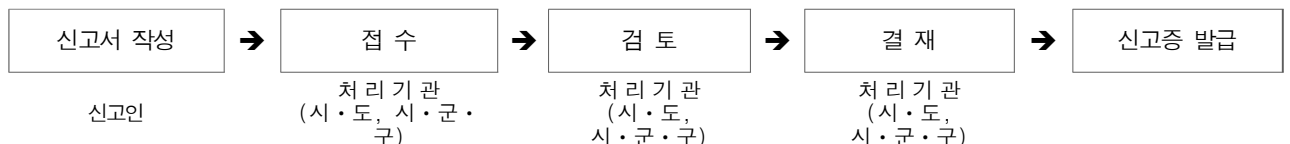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u>보관·관리</u>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보관·관리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 ----- ----- -----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 ----- ----- -----

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 6. (생략)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 다음 각 호의 서류

----- 해당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
다)-----

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④ (생 략)	-----. 1. <u>사업자등록증</u> 2.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u> 3. 「<u>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u>」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u>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u> 4. 「<u>전기사업법 시행규칙</u>」 제38조제3항에 따른 <u>전기안전점검확인서</u> ③・④ (현행과 같음)
--	---